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지
 - 제 1 항 : 대불금의 분할 상환 규정
 - 제 2 항 : 상환 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 정지 규정
 - 제 3 항 : 대불금의 “지방세채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 규정

3.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제2항, 의료보호법 제17조 독촉 등, 제1항, 제2항과 중복되어 있고,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 조례 제8조 제1항, 의료보호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중복되어 있고, 동조 제2항, 상환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 정지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중복되었으며, 동조 제3항, 대불금의 “지방세 채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2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있고, 2000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폐지 의결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